

협성대학교 가족회사 운영규정

(신설 2021.11.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과 산학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회사”라 함은 산학협력단과 기술·경영지도, 공동연구, 취업, 공용장비 이용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산학협력단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체”란 산학협력단과 협력이 필요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담교수”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 승인, 협약체결, 탈퇴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산학공동 연구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7.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
8.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학협력 관련 제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가족회사 관리

제5조 **【가입 및 승인】** ①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기업체는 가족회사 가입신청서(별지 1호서식 또는 on-line서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학과와 전담교수의 확인을 거친 뒤 단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

③산학협력단은 가입승인이 완료된 회사를 가족회사 등록부(별지 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 **【제반경비】** 협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협약서 작성】** ①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해서는 가족회사 협약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②가족회사의 협약당사자는 기업의 대표가 되고, 산학협력단의 협약당사자는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③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3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가족회사 협약서를 분실 등의 이유로 재작성을 신청할 경우, 산학협력단은 재작성할 수 있다.

⑤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회사에 필요한 경우 가족회사 인증서(별지 4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탈퇴 등】 ①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별지5호 서식)를 제출 받아 승인 후 탈퇴 처리 한다.

②가족회사가 장기간 협력 이력이 없거나, 휴·폐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전담교수의 확인과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

③가족회사가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교와 산학협력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회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2. 공용장비의 이용 및 연구소 설립
3. 취업, 현장실습, 인턴십
4. 교육 및 기술교류
5. 협의체 구성과 활동

제10조 【등급관리】 ①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등급관리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②등급 관리기준은 가족회사 등급 관리기준표(별지6호 서식)에 의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가족회사의 등급에 따라 가족회사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장 가족회사 운영위원회

제11조 【구성】 ①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족회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가족회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겸직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가족회사 제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 【소집과 의결】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장 가족회사 활동

제15조 【가족회사 권리 및 의무】 ①기업체는 자유로이 가족회사의 가입과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회사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가족회사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의 가족회사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장학금 기탁】 가족회사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에 가족회사 산학협력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등

제17조 【재정】 가족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산학협력단의 지원금과 지원기관의 지원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정보보호】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신의로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산학협력회사로 등록된 회사는 이 규정 5조 ②항의 승인절차를 거쳐 가족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년	월 일
본사주소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
			홈페이지	http://	
실무담당자 (연락담당)	성 명		회사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직 위		가족회사 가입 추천교수	성 명	
	휴대폰			학 과	
	E-mail				
가입경로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수 <input type="checkbox"/> 교내 산학협력관련 사업단 <input type="checkbox"/> 광고 (인터넷, 홍보물 등)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 종 (해당사항 에 √표시)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컴퓨터/IT(), 화학화공(), 환경(), 생활용품(), 섬유(), 세라믹/요업(), 토목건축(), 생명과학/바이오(), 기타 (직접기입 :)				
주요 생산/ 매출 품목					
협력 분야 (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기술 개발/연구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지도/사업화 <input type="checkbox"/> 경영 컨설팅(마케팅·영업·수출 등) <input type="checkbox"/> 인력 채용(인턴십, 채용) <input type="checkbox"/> 협성대학교의 공용장비(장비 활용 및 기기운용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재교육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협의회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 참여 <input type="checkbox"/> 캡스톤디자인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사항(직접입력)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p> 1. 수집·이용목적 :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협성대학교 가족회사 운영 및 각종 산학협력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수집항목 : 성명, 직위, 전화, 휴대폰번호, E-mail 3. 이용기간 : 산학협력단 운영에 따른 가족회사 가입일부터 5년간 보관 4. 개인정보이용 : 수집한 개인정보는 협성대학교 가족회사 신청을 위한 정보로만 이용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div>					
20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p>					

가족회사 등록부

등록번호	(가입년도+월일 +일련번호) (예: 20211201-001)		관련학과 및 전담교수	학과 교수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년	월 일
본사주소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
			홈페이지	http://	
실무담당자 (연락담당)	성 명		회사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직 위			가족회사 가입 추천교수	성 명
	휴대폰		학 과		
	E-mail				
가입경로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수 <input type="checkbox"/> 교내 산학협력관련 사업단 <input type="checkbox"/> 광고 (인터넷, 홍보물 등)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 종 (해당사항 에 √표시)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컴퓨터/IT(), 화학화공(), 환경(), 자동차(), 섬유(), 세라믹/요업(), 토목건축(), 생명과학/바이오(), 기타 (직접기입 :)				
주요 생산/ 매출 품목					
협력 분야 (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기술 개발/연구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지도/사업화 <input type="checkbox"/> 경영 컨설팅(마케팅·영업·수출 등) <input type="checkbox"/> 인력 채용(인턴십,채용) <input type="checkbox"/> 협성대학교의 공용장비(장비 활용 및 기기운용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재교육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협의회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 참여 <input type="checkbox"/> 캡스톤디자인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사항(직접입력) :				
교류사항 기록	(1) 기술교류 : (2) 인력교류 : (3) 협력사항 : (4) 기타사항 :				
탈퇴	탈퇴일 : 탈퇴사유 :				
기타 기록 사항					

로고

가족회사 협약서

로고

협성대학교와 ○○○○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양 기관의 발전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 기관의 교류 및 상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자문, 공동연구
2. 인력,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취업,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력 가능한 제반사항

제3조(비용부담) 업무협력 및 상호 공동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동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공개한다.

제5조(상호협력) ① 양 기관은 본 협약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 중 일방이 해지한 경우 자동 해지된다. 다만,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3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산 업 체 명
 직 함 ○ ○ ○

학교 로고

가족회사 인증서

기관(회사) 명 :

대 표 이 사 :

상기 회사(기관)는 협성대학교와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총장

가족회사 등급 관리 기준표

등급산출 기준 구분				
(3년간 등급 산출 평가항목 중에서 가족회사가 참여한 항목 수)				
등급	파트너십			멤버십
	A	B	C	D
항목수	7개 이상	4~6개	1~3개	가입

등급산출 평가항목	
기술교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장비활용(사용료 납입실적 또는 대학 공동연구/기술지원사업) ● 산업기술대전 및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 ● 기술개발과제 참여(프로젝트) ● 기술지도 또는 애로기술지원 ● 캡스톤디자인 과제 참여 ● 가족회사 기술교류회 등 ● 기술이전 수혜기업
인력교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참여 ● 인턴십 참여 ● 겸임교수 참여 ● 현장견학(행정부서 공식인정 기준) ● 창업지원 및 교육 ● 취업 ● 졸업생 재교육 등 특강(강사료 지급기준) ● 학부과정 및 학점은행제 과정 입학 ● CEO 특강 ● 대학원 입학등록
교류협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및 발전기금 출연 ● 가족회사 행사 등 대학행사 참여 ● 기타 산학협력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동일항목도 협력 학기가 다른 경우 중복 허용